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165
결재일자	2015.1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호

지방행정주사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반경자	이정희	이윤영	김종순	이비오	01/06 정원오
협 조	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	이현식			
	규제개혁실무전문관	권설아			
	법제팀장	이상수			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제정 계획



성 동 구

(기획예산과)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-

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2014. 9. 25.)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1)·출연2)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II 제정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
-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, 지도감독, 성과계약, 경영평가 등의 기준 마련

-
- 1) **출자기관**: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
 - 2) **출연기관**: 지방자치단체가 문화, 예술, 장학,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

출자·출연 기관의 정의(안 제2조)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(안 제3조~제7조)

○ 임원의 해임 요구 등(안 제4조)

- 구청장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○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(안 제5조)

-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은 예산 범위에서 필수경비를 부담하도록 함
- 사전조사와 용역, 시설비,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정함

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(안 제8조~제9조)

○ 임 기: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)

○ 간 사: 출자·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

 출자·출연 기관의 평가 등(안 제10조~제20조)

○ 성과계약(매년 1월), 성과평가(매년 6월), 성과계약 평가결과 보수 반영

○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(안 제10조 및 제11조)

-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·통보, 경영목표 달성도, 성과계약 이행 등
- 공무원, 대학 조교수 이상, 공인회계사 등으로 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

IV

향 후 계 획

- 2015. 1. 8. ~ 1. 28.: 입법예고(20일) 및 규제심사·부패영향평가·
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
- 2015. 2. 초순 : 조례규칙심의회 상정
- 2015. 2. 26. ~ 3. 2.: 제216회 임시회 의안 제출
- 2015. 3. : 조례 공포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
2. 관계 법령 발췌문 1부. 끝.